

#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92
----------	-----

2023년 4월 25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최호정 의원 외 75명
2. 회부일자 : 2023년 2월 10일
3. 상정일자 :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 II. 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교육자치를 선도하고 국가위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할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하며▲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립형사립고 미충원 보전금에 대한 미지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을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주무부처장관인 교육부장관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가 반복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자치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업무 전반에 걸쳐 엄정하고 면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함.

### I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호정 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면서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삭감한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일선에서는 삭감으로 인해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인, 사전 의결 원칙이 무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서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월 17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까지 총 9곳에서 신년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학부모는 물론 학생까지 참여한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사실을 호도하며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권한을 부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석면검사 기관의 부정 및 위반 행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가 학생들 건강과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서울시내 각급 학교 전수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금 25억 원을 준다는 공문은 시행하면서 정작 자사고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있다는 사실은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음.
-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결과는 국가공무원인 교사 채용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저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런 유사 사례가 더 없는지 철저한 확인을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크므로, 다른 국가공무원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사무를 위임한 교육부장관의 철저한 확인이 요망됨.

#### IV.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결의안은 2023년 2월 6일 최호정 의원 외 75명의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492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결의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집행으로 인한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 증가를 이유로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1) 결의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의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84조<sup>1)</sup>, 제185조<sup>2)</sup>,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sup>3)</sup>).
- 또한 교육부의 감사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의 유형으로 나뉘며,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범위로 하는 감사입니다.
- 동 결의안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집행으로
  - ①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훼손, ②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③ 자립형사립고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으로 인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④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저해 등 4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바,

동 결의안이 교육부장관에게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2)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 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훼손에 관한 사항

-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다정다감 프로젝트’는 공·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당 평균 총 5억원을 지원<sup>4)</sup>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시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005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립학교는 운영비재정결함지원에 29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예산은 11월 29일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2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중 다정다감 사업예산 1,005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립학교의 경우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비에 편성된 다정다감 사업비 298억원은 당초 제출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월 13일자 보도자료<sup>5)</sup>를 통해 예산 심의 결과 확정된 298억원을 사립학교 대상 다정다감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히고,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1,0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밝히고 향후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다정다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23년) 1억원 → ('24년) 2억원 → ('25년) 1억원 → ('26년) 1억원

5) '서울학교, 2023년부터 자율적으로 교육공간 개선 기획·추진(‘다정다감 프로젝트’)'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3.1.13.)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551호, 2023.2.6. 교육감 제출)에 지난 본예산안 심의에서 감액 확정된 1,005억 5천만원을 그대로 증액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세입예산에 교부금 미반영과 세출예산 중 일부사업의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등의 이유<sup>6)</sup>로 2월 20일 추경예산안을 다시 철회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 ‘2023년 서울교육 주요업무 공유 및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이란 명목하에 서부교육지원청을 시작(2023년 1월 9일)으로 중부교육지원청(2023년 1월 26일)까지 총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바,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 등이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예산 삭감에 대한 여론전을 펼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sup>7)</sup>.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1월 17일) 간담회에서부터 종전 PPT자료 중 ‘감액돼 못하는 사업’ 대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간담회 내용을 변경하였고, 감액 사업현황을 나타내는 표 하나만 적시하는 등 수정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 ‘다정다감 사업’의 연차별 예산 지원계획은 학교의 효율적 사업 기획 및 추진을 위해 교육청의 개략적 방침

6) ‘국민의힘 지적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추경 철회키로’,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 보도자료 (2023.2.20.) 내용 참조.

7) [단독]서울시교육청 ‘예산삭감 성토대회’물의...시의회 반발에 꼬리 내려’, 뉴시스, 김경록 기자 2023.1.20.자 보도자료 참고

“(중략)~ 24쪽에서 20쪽 분량으로 수정된 자료엔 ‘감액돼 못하는 사업’ 대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소개됐으며, 종전 17쪽 분량이었던 ‘추경 미편성 시 변화되는 사업 현황’은 모두 빠지고 감액 사업 현황을 나타내는 표 하나만 남았다. 남은 두 신년 간담회에서는 ‘예산 감액 목록’이 빠진 수정된 자료가 사용될 예정이다....(이하 생략)”

을 안내한 것”이며, “신년 간담회는 2023년 서울교육 정책 방향 및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새 학기 주요 업무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 상황을 안내하는 취지의 행사”라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sup>8)</sup>.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sup>9)</sup>에 여전히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다정다감 사업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금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감액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추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명기하여 발표함으로써, 해당 사업은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홈페이지)<sup>10)</sup>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정다감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이 변동될 수 있음을 적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행태와 함께, 당장 해당 지침을 근거로 2023년도 학교 회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학교 현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사전의결되지 않은 다정다감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우려와 함께 예산 편성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8)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

9)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서울시교육청(2022.11.) 71쪽, 79쪽, 84쪽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 계획 공고’,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재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budget.sen.go.kr/mpub/m4\\_s01.jsp?bcid=0401&m=view&bidx=2354&bcate=&sDate=&eDate=&chFld=&schStr=&page=1](http://budget.sen.go.kr/mpub/m4_s01.jsp?bcid=0401&m=view&bidx=2354&bcate=&sDate=&eDate=&chFld=&schStr=&page=1), 2023.2.27. 방문)

나)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에 관한 사항

○ 둘째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왔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모두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석면제거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sup>11)</sup>(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0.01개/cm<sup>3</sup> 이하) 이하가 될 때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잔재물 처리 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sup>12)</sup>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2018년 인헌초에서는 겨울방학동안 석면철거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잔재물이 발생하여 개학이 연기되었고<sup>13)</sup>, 결국 인헌초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3차례의 조사<sup>14)</sup>를 거쳐 당초 개학일보다 한달 늦은 2018년 4월 2일에 정상

11)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12)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

13) ‘부실 석면조사에 뿔난 서울인헌초 학부모들...1인 시위 돌입’, 뉴스1(2018.3.20.), 김재현 기자 기사

14) 1차 조사는 200여개 시료 채취해 관광현미경 검사, 2차 검사는 채취한 시료 가운데 15개를 전자현미경 검사, 3차 검사는 석면제거공사 미실시 장소 포함 시료 30개를 채취하여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함.(‘제거공사 뒤에도 석면 나왔던 서울 인헌초 2일부터 정상등교’, 연합뉴스(2018.4.1.) 이재영 기자 기사 내용 중)



등교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먼지시료를 포함한 석면잔재물 조사시 전자현미경 분석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안전 확보방안 실행계획안(2018.5.)’을 수립하였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안전조치로 잔재물 조사시 고품시료의 경우 편광현미경을, 먼지시료의 경우에는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는 방법<sup>15)</su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2022년 9월 6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는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와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을 계약한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했다.’라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서는 2022년 11월 11일, 11월 18일 2차례 전자현미경 분석사진 중복사용에 대해 실질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 1월 13일까지 교육지원청 및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용역결과보고서, 계약서류,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이후 교육청은 2023년 1월 16일에는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 겨울방학 석면해체·제거공사 중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에서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이 중복사용된 학교 17개교와 용역 업체 4곳을 적발하였고,

15) ‘2022년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시설안전과-4169, 2022.4.11.

□ 석면해체·제거공사 안전확보

○전자현미경을 사용한 잔재물 조사 강화

- 고품시료(편광현미경 분석) ⇒ 고품시료(편광현미경 분석) + 먼지시료(전자현미경 분석)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사업으로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사용한 공기시료 조사로 정확도 및 전문성 확보

○학교석면 모니터단 운영 및 전문교육 실시(연 2회): 2022. 6월중 / 12월중

- 석면해체·제거공사 과정 중 비닐보양, 잔재물 조사 등에 참여하여 투명성, 안전성 확보 및 학교석면 모니터단, 공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별 또는 원격으로 교육 실시 및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2시간 인정

- 석면모니터단 강사 수당 지급(1회 / 총 2시간 기준): 250,000원

※ 202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

○석면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운영

1월 19일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 감사결과통보를 한 후 용역업체 2곳을 형사고발(2023.2.23.)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한편, 석면조사기관 지정·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에 해당업체를 통보(2023.2.27.)하고, 4개업체에 대한 용역 대금 총 71,198,135원을 회수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시행(2023.1.10.)하고, 잔재물 결과보고서의 검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sup>16)</sup>.

○ 그러나 해당 민원감사 이외에도 석면제거 작업(2022.12.3.~12.4.) 후 교무실과 체력단련실 등에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석면이 검출(서울D중학교)된 사건<sup>17)</sup>, 노동부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특정업체의 특정공법(글러브백)의 인증 의혹 및 선정의혹, 그리고 석면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sup>18)</sup><sup>19)</sup> 등 서울시교육청의 허술한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제기<sup>20)</sup>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중에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공기질 안전성 및 잔재물조사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추후 석면조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sup>21)</sup>하였습니다(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sup>22)</sup>.

16)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석면 잔재물 용역 보고서” 사진 중복 확인-민원감사 결과 용역 업체,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 중복 사용, 재방방지대책은 올 겨울방학부터 바로 시행’, 서울시교육청(2022.1.18.) 보도자료 참조

17) ‘서울 D중학교, 제거 공사 보름 뒤 석면 검출...서울시교육청 관리 부실도 ‘노출’’, 시사저널(2023.1.9.), 김현지·조해수·공성운 기자 기사참조,

18) ‘“1급 발암물질” 석면, 학교에서 날린다’, 시사저널(2022.12.12.), 김현지·조해수·공성운 기자 기사참조,

19) ‘고광민 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석면제거 공사 10건 중 3건은 안전성 부실업체에 맡겼다-C등급 업체 21곳, D등급 업체 6곳, 미평가 업체 26곳이 서울관내 학교 석면제거 공사 수행”, 고광민 의원(2022.11.16.) 보도자료 참조

20) ‘“복붙”으로 만든 학교 석면 보고서의 진실...서울시교육청은 뭘 했나’, SBS(2023.1.26.), 임태우 기자 기사 참조

다) 자립형 사립고 미충원 보전금에 관한 사항

○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 지원금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사립고등학교로 2002년 민족사관고(강원), 광양제철고(전남), 포항제철고(경북) 등 3개교를 시범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 6개교가 지정·운영되었으며, 서울은 하나고등학교가 2009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지정되어 개교하였습니다<sup>23)</sup>.

○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한 가지 유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가 자립형 사립고의 기능을 개선한 모델로서 2010년부터 도입<sup>24)</sup>되었는바,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sup>25)</sup>에 따른 자율고등학교 중 사립고등학교 유형으로, 기존의 일반 사립고등학교와 달리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대해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는 학교로써 현재 서울에는 총 17개교<sup>26)</sup>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1) - (23. 2월)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사진 중복사용 학교에 대한 공기질 재조사 예정  
- (23. 6월)석면해체·제거한 312개 학교 대상 공기질 측정(석면 포함) 예정  
- (23. 10월)전문기관(AI시스템 활용)을 통한 석면조사용역 중복사진사용 전수조사 예정  
22)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  
23) 이덕난, 유지연,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국회입법조사처), 61권 (2019.6.27.), 1쪽 참조.  
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일부개정]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3. (생략)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25)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26) 장훈고 2023년, 동성고 2022년, 송문고 2022년, 한가람고 2022, 경문고 2020년, 대성고 2019년 일반고로 각각 전환됨

○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형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나(2020년 2월 28일 국무회의), 현 정부에서는 자사고 존치를 확정<sup>27)</sup>하고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표-1] 자사고와 일반고 비교<sup>28)</sup>

구분		자사고	일반고
개요	목적	·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 중등교육 실시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의3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학생 선발	모집단위	· 광역단위 ※ 다만, 지정당시 협의한 법인전입금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시행령 제81조의2, 민사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하나고, 김천고, 북일고, 하늘고, 용인외대부고 등 10개교)는 전국단위 선발 가능	· 지역/광역단위
	입학전형	· 서울지역: 자기주도 학습전형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 · 서울 이외 지역: 학교자율 (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 일정범위 내 추첨)	· 평준화: 추첨·배정 · 비평준화: 내신+선발고사
	사회통합전형대상자	· 모집정원의 20% 이상(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지정된 학교는 적용하지 않음)	
사립학교 재정	재정결함보조	· 없음 ※ 입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장학금,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비율(20%) 미달시 인원수에 따른 일정한 보조금 등 일부 재정 지원	· 지급
	법인전입금	· 납입금의 5%(특별시·광역시) · 납입금의 3%(도지역)	· 의무부담 없음
	납입금	·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시·도 조례로 정함

○ 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자사고는 학생모집에 있어 일반고와 달리 전국·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등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27) '尹정부, 자사고,외고 살린다...文'정책 고교학점제는 추진', 중앙일보(2022.4.20.),성지원 기자, 자사고 '존치'부실학교만 골라낸다...외고는 폐지 수순',동아일보(2022.7.29.) 기사, '정부, 자사고 존치한다지만...모집정원 못채우는 곳 많아', 조선에듀(2022.10.20.) 임민진 기자

28) 이덕난, 유지연,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NARS 현안분석(국회입법조사처), 61권 (2019.6.27.), 5쪽 참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sup>29)</sup>에 따라 자사고 지정시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비 등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있고,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는 의무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로 인해 자사고의 재정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모집정원 미달시 해당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1년과 2012년 서울지역 자사고 27교에 대한 미충원 보전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였고, 이후 교육부는 해당 비용을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켜 총액으로 교육청에 교부하여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미충원 보전금을 “201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비재정결함지원(사배자 충원 미달 재정결손 지원)’ 사업으로 34억 3천만원<sup>30)</sup>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 의결<sup>31)</sup> 하였습니다.

29)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생략)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0) 자사고 27교 3,281,213천원, 외고 5교 144,884천원

31) 제24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2012년 12월 28일.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 미달 재정결손 지원’ 사업예산 34억 3천만원<sup>32)</sup>을 재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동양고, 용문고) 학교의 재정결손금(448,460천원)을 제외한 29억 8천 2백만원이 감액의결<sup>33)</sup>되었는바,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미충원 보전금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지난해 한 언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와 외고에 지급해야 하는 미충원 보전금을 9년째 미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고<sup>34)</sup>,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자사고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미충원 보전금의 지급을 요구<sup>35)</sup>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제 교육부의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187., 2022.10.7.)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 교부”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는 자사고 등 사회적 배려학생 지원 및 미충원 학생에 대한 보전을 위해 ‘사회적배려 대상학생 지원’ 항목을 포함시켜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 산정’ 을 하고 있습니다<sup>36)</sup>.

32) 자사고 26교 3,252,977천원, 외고 4교 177,120천원

33)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2013년 7월 12일.

34) [단독]서울시교육청, 자사-외고에 줄 보전금 9년째 안줘...올해만 120억', 동아일보(2022.12.14.), 조유라 기자 기사

35) '서울 자사고들 "보전금 9년간 안 준 교육청, 권익위 제소할 것"', 뉴시스(2023.1.13.), 김정현, 김경록 기자 기사

36)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2.10.) 11쪽

1. 기준재정수요

라. 교육복지지원비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통해 미충원 보전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은 그 재원을 특정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의 재량하에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으로 인한 자사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해당 보전금을 추경안에 반영하여 지원해 주겠지만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sup>37)</sup>.

라) 교육공무원 채용에 관한 공정성에 관한 사항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38)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sup>39)</sup>을 근거로 특별채용 공고를

○ 계층 간 균형교육비(2조 7,419억원)

③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 지원(예정교부 시 유보)

- 자율형 사립고, 사립 외국어계열고, 사립 국제계열고의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지원 및 미충원 학생에 대한 보전

- (1) 자율형 사립고, 사립 외국어계열고 및 사립 국제계열고의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 (2) 자율형 사립고, 사립 외국어계열고 및 사립 국제계열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 미충원 학생에 대한 보전
  - 미충원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총원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율

37)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

38) 「교육공무원법」[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 5. (생략)

② (생략)

39)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임용 예정직의 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 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진행(서울시교육청 공고 제2018-211호)하였고,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차, 2차 전형을 거쳐 응시인원 17명 중 5명을 특별채용(2018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 이후 감사원의 감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거쳐 지난 2023년 1월 27일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서울시교육감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이처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항소가 진행중인 재판에 성실히 응해 채용에 대한 공정성 관계를 밝히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sup>40)</sup>.

○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은 현재 재판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위법성 등에 대한 논의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하고 있는바,

---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임용 예정직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립학교 교원

나.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

다.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

②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40)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



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동 결의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 채용,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직원 채용<sup>41)</sup> 등 인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사례가 또 존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표-2] 특별채용과 관련한 경과

일 자	내 용
2018.8.9.	특별채용 추진(안) 교육감 결재
2018.8.24., 10.1.	1차, 2차 법률 자문
2018.11.30.	특별채용 공고 * 응시인원: 17명
2018.12.11. ~ 12.17.	1차, 2차 전형 * 평가위원: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
2018.12.20.	인원 확정 * 평가(전형)결과: 17명 중 5명 채용 확정
2018.12.31.	특별채용 임용 알림
2020.5.7.	감사원 실지감사 시작 (특별조사국 제5과)
2020.5.27. ~	감사원 소환 감사(업무 담당자, 심사위원 등)
2020.9.11.	감사원, 교육감에게 질문서 발부 (9.22. 답변서 제출)
2020.10. ~ 2020.2.	감사원 소환 감사(추가)
2021.4.23.	감사 결과 발표
2021.4.28	공수처 입건(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
2021.5.4	서울경찰청 공수처에 사건 이첩
2021.5.18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2021.5.20	공수처에 교육감 의견서 접수
2021.7.27	교육감 출석조사(공수처)
2021.8.30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교육감 기소 의결
2021.9.3	공수처 검찰 공소제기 요구
2021.12.24	서울중앙지검 교육감 불구속 기소
2023.1.27	서울중앙지법 교육감 선고(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2년)
2023.1.30	교육감 항소

41) '최유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부당특채 재판 중,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 최유희 의원 보도자료 (2023.2.17.)

### 3) 종합의견

-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잘못된 사업 집행 등으로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학생과 학교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의 관행적 행태와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발생 경위의 파악과 책임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에 종합 감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처리의 합법성 또는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의 부정 및 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동 결의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관행적 행태와 부정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종합감사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동 결의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자체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후 다각적인 업무 개선 노력을 통해 해당 의혹을 해소할 것을 밝히고 있고, 향후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여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을 밝히고 있는바(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sup>42)</sup>,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VI. 토론요지 : 없음

---

42)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

Ⅶ.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

Ⅸ.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교도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학교 환경에 맞춰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 등 서울시교육청이 저야 할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예산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문제점들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 집행기관으로 교육행정의 공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 심의 결과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일부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결기관의 예산심의 권한이 훼손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신속한 발생 경위 파악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의 감사를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한 채 ‘다정다감’ 사업 등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집행 계획을 언론에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는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이 강행되고 있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요망됩니다.

작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의결기관에 부여된 정당한 예산심의 권한을 행사해,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본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다정다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지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당 평균 1억 원씩, 5년간 평균 5억 원가량의 자율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해당 보도자료에서 각 학교에 해당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전 학교 대상의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및 재정 관련 법령에서는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성립 전 사용과 단체장 선결처분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인, 사전의결 원칙이 무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심의권한을 부정하고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서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월 17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까지 총 9곳에서 신년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학생까지 참여한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을 못하게 됐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권한을 부정했습니다.

‘서울교육청 예산삭감 성토대회 물의... 시의회 반발에 꼬리 내려(2023.01.20. 뉴스시스)’ 라는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교육지원청을 돌며 시의회에 의해 감액된 예산항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식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방식에 부적절함을 느낀 학부모들이 시의회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일련의 사안에 대해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해 집행기관의 잘못된 사업 집행을 막고 의결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명예와 권

한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울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석면조사기관과의 계약 이행사항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밝히는 전수조사 방식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석면검사 기관의 감사 결과,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4곳이 밝혀졌습니다. 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토대로 4개 업체가 맺은 계약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 해당 업체가 계약한 17개 학교의 석면 보고서에서 내용을 서로 베끼기 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두 개의 사업체에 적을 두고 다수 학교와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한 행위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석면검사기관의 부정 및 위반 행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석면 보고서 허위 작성 문제를 두고, 언론에서는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진행되어온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청은 계약을 부실·부정하게 이행한 자의 계약 해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 등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이 있는 만큼, 학생들 건강과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서울시 전 학교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금 25억 원을 준다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정작 자사고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있단 사실은 숨겨온 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미집행한 사태가 발생한 경

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자립형사립고 사회통합전형은, 정원의 20%를 사회 취약 계층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해놓고, 미충원에 따른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매년 자사고 미충원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액을 교부받고 있지만, 지난 9년간 자사고에는 보전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재정난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보전금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예산편성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문제 제기에, 올해부터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지급하겠다면 서 지난 미지급 금액은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져야 할 공적 책임 의식, 집행기관으로 당연히 가져야 할 의결기관에 대한 이해, 업무 집행에 대한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시교육청의 비상식적인 업무 집행 양태를 바로 잡고, 정상적인 예산과 사업 집행 기준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난 1월 27일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은 국가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절차적 정당성 등의 미흡으로 교단에 서거나 서울교육 행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채용된 다른 유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진 중앙정부 주무부처 장관임으로 위 사안과 관련해 철저한 종합감사를 촉구합니다.

2023. 2.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